

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7. 4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7. 4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7. 14.(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
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청소과장 박노선)

가. 제안이유

- 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”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, 일련의 공사·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“공사장일반폐기물”에 대한 배출·운반·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”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함 (제2조 내지 제18조의2)
-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“공사장생활폐기물”로 함(안 제2조제10호)
-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으며,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의2제1항)

-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 신고를 하도록 하고, 수집·운반하는 자도 처리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함 (안 제6조의2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가 신규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
-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운반 등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고와 행정간소화를 통한 위민봉사 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